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1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기덕, 김성준,
박승진, 박철성, 봉양순,
서준오, 송도호, 이민옥,
이병도, 이승미, 이원형,
임종국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에 따라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이중언어 학습이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에서 직접 교육으로 확대됨으로써,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이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규정 신설
(안 제7조의2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다문화가족지원법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<u><신설>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</u></p> <p>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제1항제2호에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지원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평생교육국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7조의2	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	1,287,146

※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계팀장 김중헌
추계분석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웹페이지

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

🏠 바로가기



· 소개

- 수준별 다국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· 수강가능언어

- 한국어,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러시아어, 독일어, 프랑스어 등